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38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김남근・김문수・김 윤

김준혁 · 민병덕 · 박민규

박 정・박해철・송재봉

위성곤 • 이강일 • 정진욱

채현일 • 한창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아 납품·입점업체에 40일 ~ 60일까지 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 취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기업 매장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공받아 매출액을 확인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수수료만 지급받고 있음. 반면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에게는 판매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며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40여일동안 운용하다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고있음. 이처럼 판매대금 정산방식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함.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선입금한 매출대금을 판매수수료 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상인 매장임차인들은 매출대금의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됨. 「민법」 제536조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이러한 항변을 원용하여 매출대금 선입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의 지급방법 변경요구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도 불구하고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대규모유 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률의 임차료 산정에 필요한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임차료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방법 변경요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	
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	
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	
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	
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	
조의2, <u>제8조,</u> 제11조부터 제14	<u>제</u> 8조, 제8조의 <u>2,</u>
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	
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	
모유통업자"로 본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	
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	<u>10일</u>
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 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 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②
<u>30일</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의 지급방법 변경요구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이 상품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 중에 있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률의 임차료 산정에 필요한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임차료등을 지급하여야 한다.